

편집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

The Protection for Literary work and Database by Law

— 편집저작물에 대한 대법원판례 —

신각철/법제처 법제연구관

Shin, Kak-Chual./Ministry of Legislation, Legislative Research Officer



1. 데이터베이스와 편집저작물과의 관계

지난번에 저작권법을 개정('94.1.7 법률 제4, 717호)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적보호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편집물(논문·수치·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하 “편집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저작권법 제6조1항)라고 규정하였다.

이와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상 편집물의 개념에 포함시켜 용어정의 하고 법적보호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편집물”的 개념에 포함되며, 이것이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서 창작성이 있을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 독자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일본의 저작권법에서 처럼 데이터베이스를 별도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명백하게 저작물예시 규정에 설정, 별도로 용어정의하였다면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은 그 특성에 맞게 독립된 저작물로서 법

적보호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어느 조항에도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이란 용어는 찾아 볼 수 없다. 다시말하면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예시되지 아니하였고 보호규정도 전혀 없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데이터베이스는 어디까지나 “편집물”의 한 종류에 지나지 아니하며,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따른 법적보호는 법이론상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법적보호가 종래의 편집저작물에 대한 판례동향에 직접 영향을 받을것이기 때문에 최근의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최근의 대법원 판례

가. 판례① : 편집저작물의 창작성(대법원 판례, '93. 1. 21 제2부(타)결정92마1081)

(1) 판결요지

- 편집저작물을 전체로 이용(예를들면 복제) 하여야만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편집저작물 중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관하여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이용하면 반드시 전부를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 피신청인의 책에 실려 있는 연표(年表)가 소재를 추가하고 배열을 달리하여 신청인의 책에 실려 있는 연표의 창작성있는 부분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데이터베이스 저작물과 비교검토

위의 판결요지와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와 관련하여 참고 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 판결요지 (가)의 내용 : 배열의 창작성 침해

「편집저작물을 전체로 이용(복제)하여야만 저작권 침해가 되는것이 아니라,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이용하면 저작권침해가 된다.」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경우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전체(통채로 복제)를 복제하였을 경우만 데이터베이스의 불법복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속에 축적된 개개의 정보(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예컨대 키워드방식, 포맷 등)에 관하여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이용하였다면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과정은 제작자가 ① 개개의 정보가 되는 소재(素材)를 수집·선택하고, ② 컴퓨터 또는 기록매체에 입력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항목과 형식을 결정하며, 포맷(Format)을 작성하고, ③ 체계적 검색을 위한 키워드를 부여하는 작업, ④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 여러단계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른다면 데이터베이스 전체의 복제만이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앞에서 제시한 ①~④ 중 어느 부분에서든지 창작성있는 부분을 침해하였다면 저작권침해가 성립된다.

● 판결 요지 (나)의 내용 : 소재의 추가 등 위 판결요지 (나)의 내용중에 「소재를 추가하고 배열을 달리하여 원고의 책에 실려있는 연표의 창작성 있는 부분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의 내용에서 “소재의 추가, 배열의 창작성”은 데이터베이스 제작과 직접관련이 있다. 예컨대, A 회사에서 공산품 중심의 「상품유통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을 경우 B 회사에서 A 회사의 「상품유통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공산품이외로 “농산품”까지 소재를 추가하여 상품유통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영어학습용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도 A 회사에서 5만개 단어만을 소재로 제작·운영한다면, B 회사에서 10만개 단어와 이에따른 예문(例文)

까지 소재로 추가하여 선택·배열하여 제작·운영 한다면 창작성이 인정된다. 이경우 앞의 공산품이나, 뒤의 영어단어 5만개가 A회사 데이터베이스와 B회사의 데이터베이스속에 축적된 소재로서 설사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하여도 그 배열에서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영어의 단어나 예문, 또는 공산품이나 농수산품 등 상품소재 자체는 어느 특정인이 창작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소재를 추가하고 배열을 달리하였을 경우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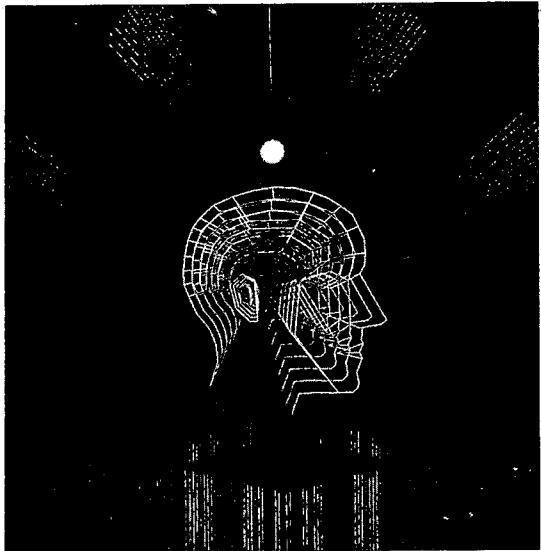
나. 판례 ② :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표현형식
(대법원 판결, '93. 6. 8 제1부, 93다3073)

(1) 판결요지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을 이어야 하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言)·문자(文字)·음(音)·색(色)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으며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것이다.

(2) 데이터베이스 저작물과 비교검토

위의 판결내용과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 방안과 관련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①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으며, 아이디어나 이론 등 표현내용 자체는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면, 데이터베이스 저작물로서 하나하나 소재의 “표현내용”은 보호받을 수 없고 이들 소재를 얼마나 창작성 있게 표현하였는가 즉 “표현형식”에 대한 보호가 요구된다. 하나하나의 정보에 대하여 키워드를 부여하고 포맷(Format)을 작성하는 등 소재의 배열이 곧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된다. 예컨대, 영어단어, 수학공식, 법령용어, 상품명칭·가격 등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이를 법령용어(법령데이터베이스), 상품명칭·가격(유통 데이터베이스) 등 개개의 정보에 대하여 창작성 있게 표현한 배열형식이 보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②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도 자유로이 이용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크게 유통되고 있는 「학습용 데이터베이스」 또는 「학습용 CD-ROM 데이터베이스」 등을 들 수 있다.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학습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을 때, 이를 정보들을 “학술적인 내용”으로서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이용되어야 하고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지리·역사 교과서 또는 과학교과서 등 특정인이 저작한 검인정교과서라 하여도 순수한 학술적인 내용을 발췌하였을 경우는 저작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학술적인 내용은 교과서를 저작한 특정인이 창작한 것이 아니라, 종래부터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개발한 학설·자료로써 인류공통의 문화유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다. 판례 ③ : 소재의 선택 및 배열과 표현기법 보호(대법원판례 '79.12.28, 79도1482호.)

(1) 판결요지

- 개인의 편저 또는 수집적인 민속도감이나 도록(圖錄)에 수록된 도형들은 비록 그 대상이 옛날부터 존재하던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화나 전통문양이라 하더라도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과 표현기법에 있어서 개인의 정신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일 경우는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2) 데이터베이스 저작물과 비교검토

위의 판결은 20여년전 오래된 판결이지만 데이터베이스 저작물과는 매우 관련이 깊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옛날부터 존재한 고유의 민속화나 전통문양은 실제로 보호기간 만료로 저작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를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지만 새로운 편집저작물일 경우 보호가 가능하다. 소재의 선택 및 배열과 표현기법에 있어서 개인의 “정신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은 보호 받는다. 위의 내용을 데이터베이스 저작물과 비교한다면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개개의 정보가 ① 저작권 보호기간

의 만료, ② 법령·관례정보등과 같이 보호받을 수 없는 저작물, ③ 수치·신문보도기사 등과 같이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자료등이라 하여도 「배열과 표현기법에서 정신적 노력」을 하였을 경우 보호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편집저작물의 경우 개개의 정보의 저작물성 보다도 편집활동에서 「정신적 노력에 의한 창작물」 즉 “정신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3. 맷음말

위에서와 같이 편집저작물에 관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을 편집저작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결론을 맺을 수 있다. 첫째,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개개의 정보(소재:素材)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여도, 데이터베이스 제작 과정에서 배열·표현기법등 “정신적 노력”이 인정되는 창작물일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 즉 법령·관례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처럼 하나 하나의 소재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여도 데이터베이스 전체로서는 보호받을 수 있다. 둘째, 소재를 상당한 정도로 추가하고, 배열을 달리 하였을 경우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대부분 소재 자체는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고, 소재를 기준의 데이터베이스보다 추가하고 배열을 달리하는 등 “정신적 노력”에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학습용 데이터베이스 등 학술정보와 관련되는 편집저작물의 경우 순수한 학술 내용은 만인 공통의 것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 수록된 학술 내용을 발췌하여 「학습용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였다 하여도, 표현형식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는 한 저작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다. [DB]